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4880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렬구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54,690원 및 그
중 134,971,833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2018.
9. 13.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9%의,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79,958,2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의,

2018. 8. 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9%의,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8. 7. 11. 접수 제 28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6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6596호로 마친 4번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 10544호로 마친 4번C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20. 접수 제6932호로
마친 3번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
10545호로 마친 3번C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10. 22.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20. 접수 제6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아래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선
급금(중도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B을 보험계약자,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에 위 각 보험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험금액(원)	보험기간	피보험자
1	2017. 11. 17.	150,000,000	2017. 11. 17. - 2018. 11. 13.	E
2	2017. 11. 17.	100,000,000	2017. 11. 17. - 2018. 11. 9.	F
3	2017. 11. 24.	100,000,000	2017. 11. 24. - 2018. 11. 9.	F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¹⁾의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고(제3조 제1항, 제2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가 지급한 위 지급보험금 및 회수한 금액,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원금잔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순번	피보험자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회수금	확정지연 손해금	원금잔액
1	E	18. 7. 19.	18. 8. 13.	150,000,000	15,028,167	24,657	134,971,833
2	F	18. 5. 31.	18. 7. 2.	100,000,000	10,021,140	-	89,978,860

1) 원고는 위 비율이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3	F	18. 5. 31.	18. 7. 2.	100,000,000	10,020,660	-	89,979,340
합계					35,069,967	24,657	314,930,033

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8. 7.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 원인으로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제280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제2 내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8. 7.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과 2018. 10.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각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상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내용
별지 제2목록 부동산	18. 7. 11. 매매예약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6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8. 10. 22. 매매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제3목록 부동산	18. 7. 11. 매매예약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6596호로 마친 4번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18. 10. 22. 매매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4호로 마친 4번C지분전부이전등기
별지 제4목록 부동산	18. 7. 11. 매매예약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20. 접수 제6932호로 마친 3번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18. 10. 22. 매매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5호로 마친 3번C지분전부이전등기
별지 제5목록 부동산	18. 7. 11. 매매예약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7. 20. 접수 제6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8. 10. 22. 매매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05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314,954,690원(= 원금잔액 314,930,033원 + 확정지연손해금 24,657원) 및 그 중 ② 원고가 피보험자 E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의 잔액 134,971,833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5.부터 대위변제 후 30일이 되는 2018. 9. 12.까지는 약정 이율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11. 9.까지는 약정 이율 연 9%의, 그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③ 원고가 피보험자 F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의 잔액 179,958,200원(= 89,978,860원 + 89,979,34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7. 3.부터 대위변제 후 30일이 되는 2018. 8. 1.까지는 약정 이율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8.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11. 9.까지는 약정 이율 연 9%의, 그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 매매예약 직후인 2018. 7. 19. 원고

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E인 계약에 따른 보험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이에 대한 피고 C의 연대보증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위 매매예약 체결일 직후인 2018. 7. 19. 이 사건 보험사고(피보험자 E인 부분)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임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 D이고 단지 그 명의를 피고 C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피고 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C에게 2012. 6. 12. 16,000,000원을, 2012. 9. 17. 42,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일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은 2018. 7. 11.로 동일한바, 피고 C은 위 제2 매매예약과 동일한 사해의사에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 C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2. 7. 11.인바,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일인 2018. 7. 11.까지 6년간 피고 D이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위를 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 C은 2012. 6. 12. G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에 1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2. 6. 29.에 5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2. 7. 11. 94,000,000원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이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은 위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그 일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피고 D이 잔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는 42,000,000원은 위 잔금지급 일시보다 약 2개월이 경과한 2012. 9. 17.에 이체가 이루어졌다.

④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인바, 딸이 어머니에게 금원을 송부하는 명목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 피고 D이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판사 박정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목록

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대 285m²
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0.72m²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부속사 2m²

제2목록

1. 경남 의령군 I 전 1362.0m²

제3목록

1. 경남 의령군 J 전 989.0m²
중 공유자 지분 2321분의 996

제4목록

1. 경남 의령군 K 전 303.0m²
중 공유자 지분 2321분의 996
2. 경남 의령군 L 전 971.0m²
중 공유자 지분 2321분의 996
3. 경남 의령군 M 전 18.6m²
중 공유자 지분 2321분의 996

제5목록

1. 경남 의령군 N 전 6.4m²
끝.